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

2021. 6. .

처분요구일람표

1.	경상북도 ♥♥♥♥대회 회계 업무처리 지연 부적정	(주의)		3
2.	♥♥♥♥ 스마트 앱 개발용역 준공금 지급 부적정	(주의)		6
3.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주의)		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상북도 ♥♥♥♥대회 회계업무처리 지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해의 ♥♥♥♥활동을 총 결산하고, 도민의 ♥♥♥♥활동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경상북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표 1] 2018년 및 2020년 경상북도 ♥♥♥♥대회 개최현황

행사명(보조사업명)	개최일자	장 소	내 용
2018 경상북도 ♥♥♥♥대회	2018.11.20.	경북도청 동락관	의식행사(국민의례, 내빈인사말씀) ♥♥♥♥시상식 경북♥♥♥♥활동 영상상영, 축하 및 재능나눔 공연 등
2020 경상북도 ♥♥♥♥대회	2020.11.13.	경북도청 동락관	의식행사(국민의례, 내빈인사말씀) ♥♥♥♥대상 시상식 경북♥♥♥♥활동 영상상영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회계규정」 제49조에서는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회계규정」 제36조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21조의2 제3호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문서관리규정」 제24조에서는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주문 전에 각각의 지출 건에 대한 품의결재를 완료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8 경상북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 등 9개 업체에 ♥♥♥♥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 및 물품을 구두로 주문(일자 미상, 51,389,770원)하고는 ♥♥♥♥대회 개최일인 2018. 11. 20.까지 공식적인 품의 및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지연하였으며, ♥♥♥♥대회가 끝난 날로 부터 최소 8일에서 최대 16일 뒤에야 품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표 2] 2018 경상북도 ♥♥♥♥대회 품의 및 계약 지연현황

(단위 : 원)

품의일	계약일	지출일	적 요	금 액	계약상대자
-	-	-	11건	51,389,770	9개 업체
소 계 (보조금)	-	-	9건	49,449,770	9개 업체
2018.11.28.	2018.11.29.	2018.11.29.	2018 경상북도 ♥♥♥♥대회 시상식 리허설 참석자 간식 제공	145,000	☑☑☑☑☑
2018.11.28.	2018.11.28.	2018.11.30.	2018 경상북도 ♥♥♥♥대회 현수막 등 제작	6,060,000	☒☒☒☒
2018.11.28.	2018.11.28.	2018.11.30.	2018 경상북도 ♥♥♥♥대회 리플렛 외 제작	2,010,000	⊙⊙⊙
2018.11.28.	2018.11.28.	2018.12.04.	2018 경상북도 ♥♥♥♥대회 홍보물 제작(손수건)	1,309,770	■ ■ ■ ■ ■ ■ ■
2018.11.28.	2018.11.28.	2018.12.10.	2018 경상북도 ♥♥♥♥대회 꽃다발 및 꽃사지 구입	300,000	目目目目

품의일	계약일	지출일	적 요	금 액	계약상대자
2018.11.29.	2018.11.29.	2018.12.10.	2018 경상북도 ♥♥♥♥대회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18,920,000	□□□ □□□
2018.12.06.	2018.12.06.	2018.12.10.	2018 경상북도 ♥♥♥♥대회 주제영상 제작 계약체결	2,500,000	ㄴㄴㄴ
2018.11.29.	2018.11.29.	2018.12.31.	2018 경상북도 ♥♥♥♥대회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무대, 음향, 조명 등)	17,880,000	△△ △△△
2018.11.28.	2018.11.28.	2018.12.31.	2018 경상북도 ♥♥♥♥대회 사진전 사진 제작	325,000	㉠㉠㉠㉠ ㉠㉠
소 계 (후원금)	-	-	2건	1,940,000	2개 업체
2018.11.28.	2018.11.28.	2018.12.31.	2018 경상북도 ♥♥♥♥대회 시상식 가로등 배너 제작	970,000	㉠㉠㉠㉠
2018.11.28.	2018.11.28.	2018.12.31.	2018 경상북도 ♥♥♥♥대회 홍보물 제작	970,000	■ ■ ■ ■ ■ ■ ■

또한 2020 경상북도 ♥♥♥♥대회를 개최할 때에도 주제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2020. 10. 29. 이전부터 ㄴㄴㄴ(대표 ○○○)에 영상제작을 구두로 주문하였음에도 품의완료 및 계약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연하다가 아래 [표 3]과 같이 ♥♥♥♥ 대회 당일(11.13.) 품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0 경상북도 ♥♥♥♥대회 품의 및 계약 지연현황

(단위 : 원)

품의일	계약일	지출일	적 요	금 액	계약상대자
2020.11.13.	2020.11.13.	2020.12.11.	2020 경상북도 ♥♥♥♥대회 주제 영상 수의계약 체결	3,300,000	ㄴㄴㄴ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는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스마트 앱 개발 용역 준공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내 ♥♥♥♥자의 스마트 폰 사용의 확대로 ♥♥♥♥ 정보 제공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 스마트 앱 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 스마트 앱 개발 용역사업 추진현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과 업 내 용
2019.10.10.	2019.10월 ~12월말까지	20,000천원	(주)■■■■■ (대표 ○○○)	· 모방일 경상북도 ♥♥♥♥증 개발 · 경상북도 ♥♥♥♥ 모바일진 · 할인가맹점 안내 등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회계규정」 제50조에서는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검사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에서는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8년도 종합감사결과 ‘경북 행복마을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하고 사업비를 지급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였다.

그리고 2019. 12. 30. 계약상대자인 (주)■■■■■는 ♥♥♥♥ 스마트 앱 개발 준공계(준공일 : 2019. 12. 27.)와 함께 지체상금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준공예정일 연기요청 공문(기존 2019. 12. 31. 변경 2020. 1. 6.)을 경상북도종합 자원봉사센터에 송부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고,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주)■■■■■가 연기요청 공문으로 지체 상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당해 사업비가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만으로 2019. 12. 31. 준공금 20,000천 원을 (주)■■■■■에 전액 지급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20 1. 10. (주)■■■■■에 6일간의 지연배상금 156,000원을 납부 요청하였고, 납부요청 당일 납부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는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지출 증빙서류 미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Ⅱ-②-가 항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아래 [표 1]과 같이 명절선물 등 50만 원 이상 2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1	2019.02.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절선물	575,000	5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명단 미 첨부
2	2019.02.2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명절선물	800,000	

2. 경조사비 지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I-4-1-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집행 한도액이 1건당 5만 원이며, 화분 또는 화환으로 대신하여 1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지출할 때는 경조사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화분 또는 화환으로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장 부인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등 18건의 축의·부의금품을 지출하면서 경조사비 및 화환을 중복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추진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집행내역	미비내용
	총계	894,000		
2019.06.07.	㉠㉠군종합♡♡♡♡♡♡센터장 부인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50,000	화환	중복집행
2019.06.07.	㉠㉠군종합♡♡♡♡♡♡센터장 부인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2019.09.26.	시군♡♡♡♡♡♡센터 관계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중복집행
2019.09.27.	시군♡♡♡♡♡♡센터 관계자 자녀 결혼식 축하화환 발송	50,000	화환	
2019.09.30.	시군♡♡♡♡♡♡센터 관계자 본인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50,000	화환	중복집행
2019.09.30.	시·군♡♡♡♡♡♡센터 관계자 본인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집행내역	미비내용
2020.03.12.	♡♡♡♡ 관계자 빙모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49,000	화환	중복집행
2020.03.12.	♡♡♡♡ 관계자 빙모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2020.04.20.	♡♡♡♡ 관계자 시모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49,000	화환	중복집행
2020.04.20.	♡♡♡♡ 관계자 시모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2020.05.13.	직원 빙부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49,000	화환	중복집행
2020.05.13.	직원 빙부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2020.06.19.	센터 관계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중복집행
2020.06.19.	센터 관계자 결혼에 따른 축하화환 발송	49,000	화환	
2020.08.21.	♡♡♡♡ 관계자 빙모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중복집행
2020.08.21.	♡♡♡♡ 관계자 빙모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49,000	화환	
2021.01.21.	♡♡♡♡센터 ☑☑☑☑ 시부상에 따른 부의금 전달	50,000	경조사비	중복집행
2021.02.22.	♡♡♡♡센터 ☑☑☑☑ 시부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49,000	화환	

3. 지출 예산과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1-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을 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아래 [표 3]과 같이 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근조화환을 지출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표 3]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2019.12.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군♡♡♡♡센터 관계자 빙모상에 따른 근조화환 발송	100,000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